



의안번호	제 2018 - 16호
의 결 연 월 일	2018. 6. 11. (제87차 정기회의)

의  
결  
안  
건

손괴범죄  
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



## **1. 의결주문**

손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**2. 제안이유**

2015. 7. 1. 손괴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형법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

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고, 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

## **3. 주요내용**

별지와 같음



## [별지]

# 손괴범죄 양형기준

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(형법 제366조), 공익건조물파괴(형법 제367조), 중손괴(형법 제368조 제1항), 재물손괴 등 치상·공익건조물파괴치상(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), 재물손괴 등 치사·공익건조물파괴치사(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), 특수재물손괴 등(형법 제369조 제1항), 특수공익건조물파괴(형법 제369조 제2항), ~~상습재물손괴 등(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)~~, 공동재물손괴 등(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), 누범재물손괴 등(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), ~~특수재물손괴 등(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)~~, ~~상습특수재물손괴 등(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)~~, 누범특수재물손괴 등(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), 문화재손상 등(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, 제2항, 제4항, 문화재절도는 제외, 이하 같음), 문화재특수손상 등(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),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상(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),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사(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) 문화재건조물파괴(문화재보호법 제94조, 문화재건조물방화 · 일수는 제외, 이하 같음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◆ 약어표 ◆

- 폭력행위처벌법 :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
## I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# 1. 일반적 기준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加重
1	재물손괴 등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공익건조물파괴	4월 - 1년	8월 - 2년	1년6월 - 4년
3	지정문화재손상 등	1년 - 2년6월	1년6월 - 3년	2년6월 - 4년
4	국가지정문화재손상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구분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</li> <li>○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○ 처음부터 (국가)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(3, 4유형)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
-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(~~상습·~~누범·특수손괴,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).
  -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전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.
  -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.

## 2. 상습·누범·특수손괴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加重
1	상습·누범·특수손괴 등	4월 - 10월 8월	8월 6월 - 1년 6월 1년 2월	1년 8월 1) - 2년
2	상습특수·누범특수손괴	6월 - 2년 1년 6월	1년 10월 2) - 3년 2년 6월	1년 6월 2년 - 4년
3	문화재특수손상	1년 - 3년	2년 - 4년	3년 - 7년

구분		감경요소	加重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○ 처음부터 (국가)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(3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</li> <li>○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(1, 2유형)</li> <li>○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</li> </ul>	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(3유형)</li> <li>○ 계획적인 범행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

- 1) 10월로 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 
2) 1년으로 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
### 3.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재물손괴 · 공익건조 물파괴치상	6월 - 1년6월	10월 - 2년6월	1년6월 - 4년6월
2	재물손괴 · 공익건조 물파괴치사	1년6월 - 3년	2년 - 5년	4년 - 7년
3	문화재특수손상치상	2년6월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4	문화재특수손상치사	3년 - 6년	5년 - 8년	7년 - 10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경미한 상해(1, 3유형)</li> <li>○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(1, 3유형)</li> <li>○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(2, 4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, 흉기 기타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(1, 2유형)</li> <li>○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</li> <li>○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중한 상해(1, 3유형)</li> <li>○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종 누범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적인 범행</li> <li>○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(1, 2유형)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

## [유형의 정의]

### 1. 일반적 기준

#### 가. 제1유형(재물손괴 등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
재물손괴 등(재물 · 문서 ·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·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)	형법 제366조
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	형법 제368조 제1항
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	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

#### 나. 제2유형(공익건조물파괴)

구성요건	적용법조
공익건조물파괴	형법 제367조
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	형법 제368조 제1항
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,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(방화, 일수 제외)	문화재보호법 제94조

#### 다. 제3유형(지정문화재손상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
지정문화재(국가지정문화재 제외) 또는 가지정문화재(건조물 제외),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(절취 제외)	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
타인이 손상, 절취,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(국가지정문화재 제외) 또는 가지정문화재(건조물 제외), 일반동산문화재 은닉	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

#### 라. 제4유형(국가지정문화재손상)

구성요건	적용법조
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(절취 제외)	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
타인이 손상, 절취,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	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

## 2. 누범 · 특수손괴

### 가. 제1유형(누범·특수손괴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
특수재물손괴 등	형법 제369조 제1항
누범재물손괴 등	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

### 나. 제2유형(누범특수손괴)

구성요건	적용법조
누범특수재물손괴 등	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
특수공익건조물파괴	형법 제369조 제2항

### 다. 제3유형(문화재특수손상)

구성요건	적용법조
지정문화재 · 가지정문화재 · 일반동 산문화재 특수손상 등(절취 제외)	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

## 3.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### 가. 제1유형(재물손괴 · 공익건조물파괴치상)

구성요건	적용법조
재물손괴 등죄 ·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	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

나. 제2유형(재물손괴 · 공익건조물파괴치사)

구성요건	적용법조
재물손괴 등죄 ·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	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

다. 제3유형(문화재특수손상치상)

구성요건	적용법조
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·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·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	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

라. 제4유형(문화재특수손상치사)

구성요건	적용법조
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·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· 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	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가.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나.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
  -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다.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
  -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
  -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,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라. 처음부터 (국가)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

## 던 경우

-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, 2항 소정의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,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.

## 마. 처벌불원(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.

## 바.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

- ‘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’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고가의 골동품, 귀금속,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(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,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)를 입힌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- ‘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’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,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사.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
  -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
  - 피해자에 대한 보복·원한,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아. 소극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자.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

-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‘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’, ‘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’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차. 계획적인 범행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
  - 사전 공모

- 피해자 유인
- 증거인멸의 준비
-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카. 경미한 상해

-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,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,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.

#### 타.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

-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,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파. 중한 상해

-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,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1.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2.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## [공통원칙]

### 1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2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3.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1.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2.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3.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 $1/2$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 $1/2$ 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 $1/3$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## I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<del>하였거나, 흉기 기타을 보이거나</del>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</li> <li>○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별금)</li> <li>○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</li> <li>○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(단 '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' 유형은 제외)</li> <li>○ 경미한 상해</li> <li>○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○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○ 계획적인 범행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○ 피해 회복 노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○ 우발적인 범행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상당 금액 공탁</li> <li>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○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○ 범행 후 구호후송</li> <li>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공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공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공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공정)사유와 일반공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공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공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